

1997. 12

제71회 정기회

**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
조례중개정조례안**

사회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박홍표)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본 조례안은 1997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환경부예규 제159호('97. 9. 1)에 의해 인상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
(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)
 - 가.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
 - 1차 위반자 3만원 → 5만원으로 인상
 - 2차 위반자 3만원 → 5만원으로 인상
 - 3차 위반자 3만원 → 5만원으로 인상
 - 나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 등)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
 - 현행 5~10만원 → 10만원~20만원으로 인상

■ 참고사항

- 환경부예규 제159호('97. 9. 1) 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
중개정안
-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

■ 검토의견

-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는 그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며, 정부개입의 수단으로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- 쾌적한 삶의 환경은 위와 같은 공공재의 일종으로서 자유방임적 상태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쉽게 파괴되기 쉬운 것입니다.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의한 보전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 조치가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.
-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투기 금지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,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폐해와 나아가서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

- 그러나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만 따져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

첫째, 환경보전이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제고가 제일의 첩경임을 생각할 때 입법예고와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다면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와 더불어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의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둘째,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, 2차, 3차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그 위반행위의 회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. 타지역 거주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또는 서구관내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전국적인 관리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- 이상과 같은 검토의 결과,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지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, 본 조례개정안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다른 어떠한 효과보다도 전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의 제고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.